

-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를 위한 -
2010년 인천항 인센티브 운영(案)



IPA 인천항만공사
운영본부 운영계획·마케팅팀

1. 2010년도 인천항 인센티브 운영계획(안)

■ 전체 지급액 : 2,800백만원 (IPA 1,800백만원 + 인천시 1,000백만원)

■ 인센티브제도 개요 (안)

구분		내 용	
선사 인센티브	신규 항로	2억원	'10년 신규기항한 컨선사중, 컨처리량 3,000TEU 이상 선사
	원양 항로	5억원	'10년 인천항 이용 원양항로 기항선사
	물량 증가	2억원	'10년 컨처리량 5,000TEU 이상이며, '09년 대비 5%이상 실적 증가한 선사 (적/공, 수출/수입 포함)
	합계		900백만원 (32%)
포워드 인센티브	물량 증가	2억원	'10년 컨 수출량이 '09년 대비 5%이상 증가한 포워드
	신규 포워드	2억원	'10년 인천항에서 신규로 컨 화물을 수출한 포워드
	합계		400백만원 (14%)
화주 인센티브	물량 증가	3억원	'10년 컨 수출입량이 '09년 대비 5%이상 증가한 중소기업 제조화주
	신규 화주	2억원	'10년 인천항에서 신규로 컨화물을 수출입한 중소기업 제조화주
	합계		500백만원 (18%)
창고 인센티브	물량 증가	3억원	'10년 컨 반입실적이 대비 '09년 대비 5%이상 증가한 보세창고
	합계		300백만원 (11%)
연안 인센티브	선사	4억원	'10년 인천항 이용 5,000TEU 이상 연안운송 물동량을 처리한 내항 선사(컨 전용선)
	화주	3억원	'10년 인천항 이용 50TEU 이상 연안운송 물동량을 처리한 화주기업
	합계		700백만원 (25%)

■ 2006년 이후 인천항 인센티브 지급현황

○ '06년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활성화를 위하여 선사대상 인천항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매년 지급액 확대

- '07년부터 인천시 인센티브 공동 지원
- '08년 포워더대상 인센티브 신규 도입
- '09년 화주·보세창고대상 인센티브 신규 도입

연 도	지급 대상	지급 기준	예 산	실제 지급내역	비 고
2006	선 사	물동량증대	400백만원	33개 선사 / 361백만원	
		상위처리선사			
		신규선사			
2007	선 사	물동량증대	1,000백만원	31개 선사 / 990백만원	인천시 지원 400백만원
		상위처리선사			
		신규선사			
2008	선 사	물동량증대	1,000백만원	28개 선사 / 637백만원	인천시 지원 500백만원
		상위처리선사			
		신규선사			
		내국보세운송			
	미주/구주항로 개설				
포워더	물동량	200백만원	44개 포워더 154백만원		
합계			1,200백만원		
2009	선사	물동량증대	1,200백만원	51개 선사 / 8개 운영사 1,200백만원	인천시 지원 800백만원
		신규선사			
		연안해운			
		환적화물 (운영사 포함)			
		미주/구주항로 개설			
	포워더	물동량	300백만원	30개 포워더 300백만원	
	화주	물동량	500백만원	50개 화주기업 500백만원	
	보세창고	물동량	300백만원	30개 보세창고 300백만원	
합계			2,300백만원		

■ 2009년~2010년 인천항 인센티브 지급안 비교

구분		2009년	2010년
선사 인센티브	기준	6개 지급기준 적용	3개 지급기준 적용
	세부 기준	- 물동량 증가선사 - 신규항로 운영선사 - 연안해운 운영선사 - 환적화물 처리선사 - 원양항로 개설선사 - 순위(점유율)별 지급	- 신규항로 운영선사 - 원양항로 개설선사 - 전년대비 물량증가 선사
	예산	1,200백만원	900백만원
포워드 인센티브	기준	1개 지급기준 적용	2개 지급기준 적용
	세부 기준	- LCL 화물 수출실적 상위 30위	- 전년대비 수출실적 증가포워드 - 신규 수출 포워드
	예산	300백만원	400백만원
화주 인센티브	기준	1개 지급기준 적용	2개 지급기준 적용
	세부 기준	- FCL 화물 수출실적 상위 50위 (중소기업 한정)	- 전년대비 수출입실적 증가 중소화주 - 신규 수출입 중소화주
	예산	500백만원	500백만원
창고 인센티브	기준	1개 지급기준 적용	1개 지급기준 적용
	세부 기준	- 보세창고 반입실적	- 전년대비 반입실적 증가 보세창고
	예산	300백만원	300백만원
연안 인센티브	기준	선사 인센티브에 포함	- 연안해운 운영선사 - 연안해운 이용화주
	세부 기준		
	예산		700백만원
전체예산		23억원	28억원

2. '10년 인천항 인센티브 추진 방향

□ 인센티브 지급금액 대폭 확대 (5억원 증액)

- '09년 2,300백만원 (IPA 1,500백만원 + 인천시 800백만원)
→ '10년 2,800백만원 (IPA 1,800백만원 + 인천시 1,000백만원)

□ 인센티브 지급방식 개선

○ 원양항로 창출관련 인센티브 개선

- 기존 현금지급방식(기항시 150백만원 제공)을 변경하여 원양항로 개설 시점부터 1년간의 항만시설사용료를 산정 후 보전

○ 신규화주 및 포워더 대상 인센티브 도입

- 신규포워더 : '10년도 인천항에서 신규로 수출한 포워더 대상 지급
- 신규화주 : '10년도 인천항에서 신규로 수출입한 중소기업 제조화주 대상 지급

○ 연안해운 지원관련 인센티브 강화

- 기존의 선사대상 인센티브 이외에 연안해운 이용화주 대상 인센티브 도입

○ 순위별 지급기준 폐지

- 기존에 적용되던 인천항 컨처리량 상위 선사·포워더·화주·보세창고 인센티브 지급 폐지
- 물동량 회복세를 감안, 전년대비 증가한 물동량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

3. 인천항 인센티브제도 세부운영계획(안)

■ 인센티브제도 세부내역 (안)

I. 선사인센티브 (900백만원)

□ 지급기준(안)

○ 제 1 선정기준 : 신규기항 선사

대 상	'10년 신규기항한 컨선사중, 컨처리량 3,000TEU 이상 선사 (기존 기항선사 포함)
세부기준	* 총물량 기준 지급 (TEU기준) 1만TEU미만 : 20백만원 2만TEU미만 : 40백만원 2만TEU이상 : 60백만원
	* 지급총액 초과시 상위 업체 順으로 예산내에서 지급 * 기존 기항선사 : 신규기항항로 선박의 물동량 기준으로 지급 * 1개 선사 2개 이상 신규항로 개설시 : '10년 신규항로에서 처리한 전체 물동량 산정 후 적용 * 제 3기준과 중복수여불가, 액수가 큰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예산배분	200백만원

○ 제 2 선정기준 : 원양항로 개설선사

대 상	'10년도 원양 "컨" 항로 개설 선사 * 인천항 기항주기 2주 1항차 이상, 3개월 이상 연속 운영한 실적에 한함 * 원양항로 : 중국, 일본, 동남아 항로를 제외한 항로 (인도, 서남아, 대양주 포함)
예산배분	500백만원
세부기준	* 최초 기항시부터 1년간 항만시설사용료(입출항료, 화물료, 접안료, 정박료)를 정산하여 현금으로 보전 · 기항일~'10년 말일까지 : '11년 2월 지급 · '11년 1월~1년째 해당일 : '12년 2월 지급 ('12년 예산 적용) * 다수의 선사가 공동 운항할 경우 투입선박량에 따라 분할 지급함 * 연간 2개항로 이상 개설시 항로별로 예산을 분할 지급함 * 지급총액 초과시 상위 업체순으로 예산내에서 지급 * 제 1기준과 중복지급하지 않음

○ 제 3 선정기준 : 물동량 증가 선사

대 상	· '09년 컨처리량 5,000TEU 이상이며, 5% 이상 처리실적 증가선사 (적/공, 수출/수입을 포함한 실적임)
예산배분	200백만원
세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U당 단가 : 5,000원 * 지급상한액 : 3천만원 * 지급총액 초과시 상위 업체 順으로 예산내에서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내에서 지급불가 선사 중 1기준 해당선사는 1기준 지급액을 적용하여 지급

포워더, 화주. 보세창고 인센티브 공통 적용기준

- 종합인증우수업체(AEO) 및 관세행정 발전기여자 우대
-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 사실이 없을 것 (공통)
- 관세 및 국세(과태료 포함) 체납이 없을 것 (공통)
- 관세법 제175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보세창고, 포워더)
- 물류정책기본법 및 관세법에 의한 정상 등록업체일 것 (포워더)
- 인천본부세관 제공 가감점기준 적용후 실적이 음수일 경우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II. 포워더인센티브 (400백만원)

□ 지급기준(안)

- 제 1선정기준 : 물동량 증가 포워더

대 상	'10년 인천항 이용 화물 수출실적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포워더
예산배분	200백만원
세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U당 단가 : 10,000원 <li style="padding-left: 20px;">- 5%이상 증가량 × 10,000원 * 지급상한액 : 3천만원 * 지급총액 초과시 상위 업체 順으로 예산내에서 지급

- 제 2선정기준 : '10년도 신규수출 포워더

대 상	'10년 인천항에서 신규로 컨 화물을 수출한 포워더
예산배분	200백만원
세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물량 기준 지급 (TEU기준) <li style="padding-left: 20px;">1천TEU미만 : 10백만원 <li style="padding-left: 20px;">5천TEU미만 : 20백만원 <li style="padding-left: 20px;">1만TEU미만 : 30백만원 <li style="padding-left: 20px;">1만TEU이상 : 50백만원

○ 비고

- LCL, FCL을 포함한 실적임. (Master B/L은 제외)
 - 연간 LCL 총중량을 인천항 수출 FCL 건당 평균 중량인 7톤으로 나누어 TEU로 환산
- '10년 **300TEU** 이상 컨화물 수출 포워드 대상 지급
- 근거자료 : 인천본부세관 제공 포워드별 실적자료
- 제한규정 : 인천본부세관 제공 규정에 따름
- 잔액발생시 포워드 인센티브 중 예산이 부족한 기준으로 전환하여 지급

□ 가·감점 제한규정 (인천본부세관 제공규정)

구분	세부기준	
감점	○ 관세법 제225조에 의한 변경신고 불이행 - 100TEU 차감 * 실적산정전 변경신고 이행시 제외	
	○ 포워드 이중등록부호 사용 - 100TEU 차감 * 실적산정전 이중부호 삭제시 제외	
	○ <u>입출항적하목록</u> 정정관련 과태료 부과 - 건당 50TEU 차감 (당해연도에 한함)	
	○ 전년도 <u>입출항적하목록</u> 평균정정률을 초과한 포워드 - 건당 5TEU 차감	
가점	○ 종합인증우수업체(AEO) - AAA등급 (300TEU), AA등급 (200TEU), A등급 (100TEU) 가산	○ Clean 포워드 - 100TEU 가산

III. 화주인센티브 (500백만원)

□ 지급기준(안)

- 제 1선정기준 : 물동량 증가 화주기업

대 상	'10년 인천항 이용 화물 수출입 실적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 제조화주
예산배분	300백만원
세부기준	* 증가율별 차등지급 100% 이상 : 20백만원 100% 미만 : 15백만원 30% 미만 : 10백만원 15% 미만 : 8백만원 * 지급총액 초과시 상위 업체 順으로 예산내에서 지급

○ 제 2선정기준 : '10년도 신규수출 화주기업

대 상	'10년 인천항에서 신규로 컨 화물을 수출입한 중소기업 제조화주
예산배분	200백만원
세부기준	* 총물량 기준 지급 (TEU기준) 500TEU미만 : 5백만원 700TEU미만 : 10백만원 1천TEU미만 : 20백만원 1천TEU이상 : 30백만원

○ 비고

- '10년 인천항 이용 **300TEU** 이상 컨화물 수출입 중소기업 제조화주 대상 지급
- 근거자료 : 인천본부세관 제공 화주별 실적자료
- 제한규정 : 인천본부세관 제공 규정에 따름
- 잔액발생시 화주 인센티브 중 예산이 부족한 기준으로 전환하여 지급

□ 가·감점 제한규정 (인천본부세관 제공규정)

구분	세부 내용
감점	○ 수출신고 취하건수 1건당 10TEU ○ 수출신고 정정신청 1건당 1TEU(단, 기간연장 신청건은 제외)
가점	○ 종합인증우수업체(AEO) - AAA등급 300TEU, AA등급 200TEU, A등급 100TEU 가산 ○ 세관의 추천에 의해 표창을 받은 경우 - 정부포상(총리 이상) 100TEU, 장관 및 청장 70TEU, 본부세관장 50TEU

IV. 보세창고 인센티브 (300백만원)

□ 지급기준(안)

대 상	'10년 인천항 수출입화물 반입처리실적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보세창고 (컨테이너 화물에 한하며 증량기준으로 산출함)
예산배분	300백만원
세부기준	* 증가율별 차등지급 20% 이상 : 20백만원 20% 미만 : 15백만원 15% 미만 : 10백만원 10% 미만 : 8백만원 * 지급총액 초과시 상위 업체 順으로 예산내에서 지급
비 고	* 근거자료 : 인천본부세관 제공 보세창고 물량 등록 실적자료 * 제한규정 : 인천본부세관 제공 규정에 따름 * 인센티브 취지상 보세창고 실적을 합산한 업체 기준으로 지급 * 내항 보세창고의 경우에도 화물처리 실적에 따라 지급

□ 가·감점 제한규정 (인천본부세관 제공규정)

구분	세부 내용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연도에 물품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회당 1,000TEU 차감 ○ 당해연도에 보세화물 관련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 건당 50TEU 차감 ○ 당해연도에 보세화물 관련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 회당 50TEU 차감 ○ 당해연도에 보세화물 관련 주의처분을 받은 경우 : 회당 30TEU 차감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인증우수업체(AE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AA등급 300TEU, AA등급 200TEU, A등급 100TEU 가산 ○ Clean 보세창고 : 100TEU 가산 ○ 세관의 추천에 의해 표창을 받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포상(총리 이상) 100TEU, 장관 및 청장 70TEU, 본부세관장 50TEU

V. 연안해운 인센티브 (700백만원)

□ 지급기준

○ 제 1 선정기준 : 연안물량 처리선사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Port-MIS 기준 인천항 이용 5,000TEU 이상 연안운송 물동량을 처리한 내항선(컨 전용선) 선사 * 연안운송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계법에 등록된 선사
세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U당 단가 : 10,000원 * 2개 업체 이상 운영시 예산 내에서 점유율대로 지급
예산배분	400백만원

○ 제 2 선정기준 : 연안물량 처리 화주기업

대 상	* '10년 인천항 이용 50TEU 이상 연안운송 물동량을 처리한 화주
세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U당 단가 : 10,000원 * 지급총액 초과시 상위 업체 順으로 예산내에서 지급 * 지급상한액 : 3천만원 * 근거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본부세관 제공 연안보세운송실적 - 선사 및 화주기업 등 제공 거래명세서 (실화주, 운송사, 포워더 등 포함)
예산배분	300백만원

4. '10년 인천항 인센티브제도 지급계획

□ 인센티브 지급예산 확보

- 전체예산 28억원 중 인천시 예산 10억원 확보예정
 - IPA 자체예산 : 18억원 (전년대비 3억원 증액)
 - 인천시 예산 : 10억원 (전년대비 2억원 증액)

□ 인센티브 지급절차



(참 고 1)

■ 국내외 주요 항만 인센티브 제도현황

1. 중 국

○ 상해항

1) 수출입화물 하역료 감면(SCT, 외고교, 양산)

- 전년도 처리물량기준 당해 연도 처리물량에 대해 단계별 인하요율 적용
- 당해 연도 선사별 물동량 / 전년도 선사별 물동량
 - ✓ 100% 미만 : 4% ✓ 100~120% 이하 : 8% ✓ 120% 초과 : 12%

2) 환적화물

- 전년도 처리물량기준 당해연도 처리물량에 대해 단계별 인하요율 적용
- 당해 연도 선사별 환적물량 / 전년도 선사별 환적물량
 - ✓ 100~120% 미만 : 20% ✓ 120% 이상 : 30% → 추가 4%
- 환적화물의 경우 in/out 중 한번만 징수함

※ 자료출처 : H사, Y사 인터뷰 조사 결과

○ Ningbo항

1) 총화물(수출입화물 + 환적화물) 하역료 감면

- 당해 연도 물동량 / 전년도 물동량
 - ✓ 100% 미만일 경우 : 전체 물동량 기준 상위 15개 선사에게 요율의 5%를 할인
즉, Ningbo항의 THC는 $MOC \text{ Tariff} * 125\%$ 이나 상위 15개 선사에게는 $MOC \text{ Tariff} * 120\%$ 의 요율을 적용
 - ✓ 전년도 물량을 초과했을 경우는 초과 5% 할인
 - ✓ 전년대비 120% 증가했을 경우 추가 1% 할인
 - ✓ 전년대비 130% 증가했을 경우 추가 2% 할인

2) 환적화물 하역료 감면

- 환적화물에 대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없음
- 환적화물의 경우 in/out 중 한번만 하역료를 징수함

※ 자료출처 : H사, Y사 인터뷰 조사 결과

○ 홍콩항(HIT)

1) 수출입화물 하역료 감면

- Volume Discount

- ✓ 1 ~ 150,000TEU : 기본요율
- ✓ 150,001 ~ 200,000TEU : 3% 감면
- ✓ 200,001 ~ 250,000TEU : 4% 감면
- ✓ 250,001 ~ 300,000TEU : 5% 감면
- ✓ 300,001 ~ 350,000TEU : 6% 감면
- ✓ 350,001 ~ 400,000TEU : 7% 감면
- ✓ 650,001 ~ 700,000TEU : 13% 감면

2) 환적화물 하역료 감면

- 60,000TEU 초과시 초과물량에 대해
TEU당 기본요율 US\$ 147.4 → US\$ 120.6,
FEU당 기본요율 US\$ 214.5 → US\$ 175.5

※ 자료출처 : H사, Y사 인터뷰 조사 결과

○ 칭다오항(QQCT)

1) 수출입화물 하역료 감면

- 총물동량 * 하역료 * 감면비율
- 물량감면비율

- ✓ 2-5만 TEU : 3%
- ✓ 5-10만 TEU : 5%
- ✓ 10-13만 TEU : 6%
- ✓ 13-15만 TEU : 8%
- ✓ 15-20만 TEU : 10%
- ✓ 20-30만 TEU : 11%
- ✓ 30-40만 TEU : 12%
- ✓ 40-50만 TEU : 13%
- ✓ 50-65만 TEU : 14%
- ✓ 65-80만 TEU : 15%
- ✓ 80만 TEU 이상 : 16%를 감면한 금액을 다음 해에 터미널이 해당금액을 선사에게 Rebate

2) 환적화물 하역료 감면

- 기본요율의 70%를 할인하여 줌
- 환적화물의 경우 in/out 중 한번만 징수함

3) 신규 항로 하역료 감면 : 20% 할인

※ 자료출처 : H사, Y사 인터뷰 조사 결과 및 칭도 qianwan 컨테이너부두유한공사 내부자료

○ 텐진항

1) 총화물(수출입화물 + 환적화물) 하역료 감면

- 연간 총물동량이 50,000TEU 이상인 선사에 대해 하역비 5%를 다음해에 지급
- 미주/구주 운항 선사 10% 할인

2) 환적화물 하역료 감면 없음

- 환적화물의 경우 in/out 중 한번만 징수함

3) 신규 기항 하역료 감면 : 15% 할인

※ 자료출처 : H사, Y사 인터뷰 조사 결과

2. 동남아시아

○ 카오슝항

- 수출입컨테이너의 하역료는 20'의 경우 US\$ 85이며, 40'는 US\$ 100임(H사 기준)

1) 총물량(수출입화물 + 환적화물)

- 연간 330,000TEU 달성시 US\$ 90,000 전대료 감면
- 아래의 구간별 목표치(연간)를 달성했을 경우 구간에 따른 추가 전대료 할인
 - ✓ 450,000 - 749,999TEU : 전대료 5% 할인
 - ✓ 750,000 - 999,999TEU : 전대료 6% 할인
 - ✓ 1,000,000 - 1,249,999TEU : 전대료 7% 할인
 - ✓ 1,250,000 - 1,499,999TEU : 전대료 8% 할인
 - ✓ 1,500,000 - 1,749,999TEU : 전대료 9% 할인
 - ✓ 1,750,000 - 1,999,999TEU : 전대료 10% 할인
 - ✓ 2,000,000,TEU 이상 : 전대료 11% 할인
- 총물량 순위
 - ✓ 전대료 감면 : US\$ 90,000(1등), US\$ 60,000(2등), US\$ 45,000(3등), US\$ 30,000(4등)

2) 환적화물

- 당해 연도 증가물량이 10,000TEU를 초과할 때마다 전대료 US\$ 90,000씩 감면
- 환적물량 비율에 따라 아래의 구간별로 전대료 감면
 - 50 -59% : US\$ 15,000
 - 60 -69% : US\$ 18,000
 - 70 -79% : US\$ 21,000
 - 80%이상 : US\$ 24,000

3) 접안료(타 항목 중복적용 불가)

- 12시간 이상 접안시 경과분 20% 감면
- 처녀기항, 선박수리시 50% 감면
- 입항척수가 전년의 80% 이상 경과시 12시간 이내 접안료 20% 감면
- 연간 50회 이상 입항 : 10% 감면
- 연간 100회 이상 입항 : 20% 감면
- 연간 200회 이상 입항 : 30% 감면
- 연간 300회 이상 입항 : 40% 감면
- 60,000 GRT 이상의 선박은 40% 감면(2006.05.16 - 2008.12.31까지 시행)
- 항내 Phase out시 50% 감면

4) 예선료

- 예선 사용시간이 전년 사용시간 초과시 40% 감면
- 2시간 이상 예선 사용시 2시간 초과분에 한해서는 20% 감면
- 처녀기항, 선박수리시 40% 감면
- 항내 shifting시 40% 감면
- 항내 Phase out시 40% 감면

5) 야간 및 공휴일 할증 없음

※ 자료출처 : H사, Y사 인터뷰 조사 결과

○ 싱가포르항

1) 환적화물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 인센티브는 PSA와 개별선사와의 사적계약에 의해 이루어짐
- 선사는 전년도 실적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여, 일정한 화물량을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하역료를 할인받음. 하역료 할인 기간은 3~5년 정도이며, 만약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할인된 하역료를 반환함
- Phase in-out하는 환적화물의 경우 하역료를 48%(20') ~ 66%(40') 할인(이때 PSA는 선사의 신고를 신뢰함)
- 환적화물은 7일 동안 장치료 면제함. 이에 비해 수출입화물은 프리타임이 없음
- 95일 이상 수리 선박 : 항비(접안료) 50% 할인
- 선용품관련 목적으로 24시간 이상 기항 : 항비(접안료) 20% 할인
- 선사는 PSA와의 계약에 의해 입항료 접안료에 대해 일정비율할인을 받음

2)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기타 인센티브 제도

- 항내 환적화물량의 이송의 효율을 위해 모선사의 선박이 입항하는 선석 근처 야드블록에 피더화물을 적재하여 줌으로써 환적시간 및 비용을 줄여주고 있음(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터미널 운영실무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조인트 벤처로 개발된 선석(케펠, 파시르판장)의 경우 PIL, 찬채 MSC에 선석 우선 사용권이 부여됨. 이외에는 FIFS로 운영됨

※ 자료출처 : H사, Y사 인터뷰 조사 결과

3. 일 본

○ 동경향

1) 총화물(수출입화물 + 환적화물)

- 하역료 - Gantry Crane(아오미 공공, 시나가와 공공)
 - ✓ 겐트리 크레인의 사용시간이 전년도 실적을 상회하는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하여 크레인 사용료를 50% 감면
 - ✓ 30분당 US\$ 450 → 30분당 US\$ 225
 - ✓ TEU당 Gantry Crane 비용 추산 : 시간당 25개를 처리할 경우 Gantry Crane 사용료는 US\$ 900, 이는 개당 US\$ 36 정도이며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개당 US\$ 18 정도임
- 입항료, 계류시설 사용료 감면
 - ✓ Container Ship(공사부두, 아오미 공공, 시나가와 공공) : 선박의 양적화물량이 기준 물량 초과시 선박당 입항료와 계류시설사용료 30% 감면
 - ✓ 대형선(오오이 컨부두, 아오미 컨부두(공사, 공공)) : 5만톤 이상 선박의 경우, 5만톤 초과분에 대한 입항료 면제
- 내항 운송 인센티브(아오미 공공, 시나가와 공공)
 - ✓ 내항 피더선이 수출입피더컨테이너를 수송하는 경우, 계류시설사용료와 크레인 사용료 50% 감면하고 그 화물을 외항선(모선)에 양적하할 경우 크레인 사용료 50% 감면

2) 환적 수송 인센티브(아오미 공공, 시나가와 공공)

- 국제 환적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하는 경우 크레인 사용료 50% 감면

3) 신규 항로 개설

- 신규 항로를 개설할 경우 1년간 입항료의 50%를 감면
- 감면은 최초 선박 투입일로부터 1년간 감면

4) Group Incentive

- 목적 : 항만시설의 효율적 활용, 리드타임 단축을 위한 물류공동화 촉진
- 그룹 인센티브 : 영세한 업자들이 공동으로 창고 또는 장치장을 빌려 운영할 경우 상옥 또는 야적장의 사용료를 30% 감면
- 일요 하역 인센티브 : 일요일인 경우, 크레인 사용료 50%, 입항료와 계류시설사용료 100% 감면(오오이, 아오미, 시나가와 컨), 외항과 내항 모두 해당
- 일요 게이트 오픈 인센티브 : 일요일에 게이트 오픈할 경우 야드 사용료 50% 감면 (아오미, 시나가와). 화주 휴무가 많아 실질적인 효용은 미흡
- 일요 하역 인센티브 : 일요일 하역시 입항료와 계류시설사용료 면제

※ 자료출처 : 동경도 항만국 내부자료

○요코하마항

1) 선사 및 수출입화물

- 정기선의 신규 항로 개설 : 입항료 및 안벽사용료를 1년간 전액 감면
- 50,000GT 이상의 컨테이너선박 입항 : 초과분에 대해 입항료 감면
- 1회 입항시 1,000 Box 이상의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할 경우 : 입항료를 다음과 같이 감면
 - ✓ 1,000 -1,499 Box : 30% 감면
 - ✓ 1,500 Box 이상 : 50% 감면
- 선사가 1년간 50,000 Box 이상의 컨테이너화물을 취급한 경우 : 안벽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감면
 - ✓ 50,000 - 99,999 Box : 5% 감면
 - ✓ 100,000 - 149,999 Box : 10% 감면
 - ✓ 150,000 - 199,999 Box : 15% 감면
 - ✓ 200,000 - 249,999 Box : 20% 감면
 - ✓ 250,000 Box 이상 : 25% 감면
- 3,000GT 이상 10,000GT 미만 선박이 입항하는 경우 : 입항료 50% 감면

- 하역 개시 하루 전에 선박이 접안한 경우 : 접안시간에서부터 하역개시일의 오전 8시 30분까지는 전액을 감면

2) 환적화물

- 환적화물의 경우 Gantry Crane과 부두용지 사용료를 각각 감면해 줌
 - ✓ 환적화물을 취급하는 경우 : 50%, 50% 감면
 - ✓ 시장이 지정하는 일정량 이상 컨테이너 화물을 요코하마항에서 취급하는 경우 : 각각 75% 감면

3) 기타 인센티브

- 내항선이 컨테이너 화물을 하역할 경우 : Gantry Crane 사용료 75% 감면
- 컨테이너 화물 수송에 있어서 수로 물양장과 Pusher-boat를 이용하여 하역할 경우 : Gantry Crane 사용료 50% 감면 및 부두용지 사용료 75% 감면
- 요코하마항에서 수로 물양장과 Pusher-boat를 계류지로 하는 경우 : Gantry Crane 사용료 75% 감면

4) 항만 경쟁력 강화 인센티브

- 항만 경쟁력 강화 인센티브는 요코하마항의 경쟁력 향상 및 물동량 유치를 위해 터미널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 제도임
- 컨테이너부두 운영자가 일정 이상의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할 경우 : 부두용지 사용료 50% 감면
- 컨테이너화물의 취급효율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 부두용지 사용료 50% 감면

※ 자료출처 : 요코하마 홈페이지

4. 국내 주요항만 2010년 인센티브 제도 현황

구분	인천항	부산항	광양항	평택항	군산항	포항항
예산액	28억원	50억원	50억원	10억원	주)15억원	10억원
'09년도 "컨" 물량	158만 TEU	1,198만 TEU	183만 TEU	38만 TEU	7만 TEU	0.3만 TEU
지급대상	선사, 포워더, 화주, 보세창고	선사 운영사	선사, 화주, 포워더	선사, 포워더, 보세창고, 카페리선사	포워더 화주	화주
지자체 보조금	인천시10억원	-	광양시 5억원 전라남도 5억원	경기도 5억원 평택시 5억원	군산시 전라북도	포항시 5억원 경상북도 5억원

주) 실제 지급액 44억원으로 추정, 군산시청에서 분기별로 지급중이며 예산초과액은 추경예정

(참 고 2)

중소기업의 정의

해당업종	분류부호	규모기준
1. 제조업	D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업 건설업 운송업	C F 60~62	자본금 30억원 이하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5211 55111 55113 64 72 7432 8511 872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01123 B E 51451 5171 5281 52893 63 74 75 871 88992	매출액 200억원 이하
5. 도매 및 상품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공연산업 뉴스 제공업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51 712 731 873 881 8823 90	매출액 100억원 이하
6. 그 밖의 모든 업종		매출액 50억원 이하

※ 해당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청장이 고시 (2000.1.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이며,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해당업종은 직전사업년도의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임

※ “자본금”은 직전사업년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매출액”은 직전사업년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